|  |  |  |
| --- | --- | --- |
| **세무 행정재의 규칙**  국가세무총국 령 제21호  《세무 행정재의 규칙》을 2009년 12월 15일 국가세무총국 제2차 국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세무 행정쟁의 해결에서 행정재의의 역할을 일층 더 발휘시키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기관의 법적 직권행위를 감독,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이하 행정재의 법이라 함)과《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 실시세칙》(이하 행정재의 법 실시세칙이라 함)에 의거하고 세수업무 실정에 결부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세무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세무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칙에서 세무 행정재의기관(이하 행정재의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법적으로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함과 아울러 행정재의 결정을 하는 세무기관을 말한다.  제4조 행정재의는 합법, 공정, 공개, 즉시의 원칙 그리고 국민에게 편이를 주는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은 의법행정 관념을 수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을 강화하며 행정재의 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오류를 지체 없이 시정함으로써 법률실시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재의 청구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청인이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하면서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을 수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조 각급 세무기관의 행정수장은 행정재의 제1 책임자로서 직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행정재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 제삼자에게 안건자료 조회, 자문접수, 조정, 청문회 등을 위한 전문장소와 기타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각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행정재의와 관련한 기초투입을 늘리고 행정재의활동의 정보화건설을 추진하며 증거조사에 필요한 사진, 녹음, 녹화 및 안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스캐닝, 투영, 팩시밀리, 카피 등 설비를 갖추고 안건처리를 위한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세무 행정재의기구와 인원  제11조 각급 행정재의기관의 법제업무 책임기구(이하 행정재의기구라 함)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사항을 처리하고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서류와 자료를 사열한다.  (3) 행정재의를 신청한 구체 행정행위의 합법여부와 적절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의결정을 기안한다.  (4) 이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심사신청을 처리하거나 이송한다.  (5) 행정재의 법과 그 실시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피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 처리건의를 제출한다.  (6) 행정재의활동에서 발로된 문제를 검토하고 즉시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개진건의를 제출하며 중대한 문제를 지체 없이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한다.  (7) 하급 세무기관의 행정재의활동을 지도, 감독 한다.  (8) 행정소송사건의 응소사항을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알선한다.  (9) 행정재의안건의 배상사항을 처리한다.  (10) 행정 재의, 소송, 배상 등 안건의 통계, 보고, 서류보관 및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의 서류보관 업무를 처리한다.  (11) 행정재의활동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각급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안건, 난의안건을 검토하고 처리건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기기관 이외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  제13조 행정재의 담당직원은 행정재의 직책이행에 부응하는 품행과 전문지식, 업무능력을 소유하고 행정재의 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 행정재의의 범위  제14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이 세무기관의 하기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출한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다.  (1) 조세 징수행위. 여기에는 납세주체, 징수대상, 징수범위, 감세, 면세, 세금환급, 세액대체, 적용세률, 세액 계산의거, 납세절차, 납세기간, 납세지점 및 조세 징수방법 확인 등과 관련 구체행정행위, 조세 징수, 가산금 징수, 대리 공제 납부인, 세무기관이 위임한 단위나 개인이 행한,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수취 대리납부, 대리징수행위 등을 포함한다.  (2) 행정허가, 행정 심사인가 행우.  (3) 계산서 관리행위. 여기에는 매출, 징수 납부, 대리 작성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4) 세수 보전조치, 강제 집행조치.  (5) 행정 벌금행위.  a. 벌금액  b. 재산이나 불법소득 몰수  c. 수출 세금환급권리 정지.  (6) 하기 각목의 직책을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a. 세무등록증서 발급  b. 세금 완납증명, 외출경영활동 조세징수 관리증명 발급이나 제시  c. 행정배상  d. 행정포상  e.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타행위.  (7) 자격 인정행위.  (8) 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납세담보행위.  (9) 정부 정보공개 업무에서의 구체 행정해위.  (10) 납세신용 등급평가행위.  (11)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제한한 행위.  (12) 기타 구체 행정행위.  제15조 신청인이,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하기 규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재의기관에 관련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일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그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관련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기 전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세무총국 또는 국무원 기타부서의 규정.  (2) 기타 각급세무기관의 규정.  (3) 지방 각급인민정부의 규정.  (4) 지방 각급인민정부 업무부서의 규정.  전항에서 말하는 규정에는 규정제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 행정재의의 관할  제16조 각급 국가세무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상급 국가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제17조 각급 지방세무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상급 지방세무국이나 당해 세무국의 동급 인민정부를 선택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나 인민정부가 지방세무국 행정재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국가세무총국의 구체 행정해위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거나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의 재결은 최종재결이다.  제19조 하기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1) 계획 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 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 지방세무국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세무소(분국), 각급 세무국 검사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3) 2개 이상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세무기관이 여타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직전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4) 취소된 세무기관이 취소되기 전에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5) 벌금을 규정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기관이 행한 벌금가중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단 벌금처벌과 벌금가중처벌에 모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세무기관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일괄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전항 제 (2), (3), (4), (5)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구체 행정행위 발생지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현급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이송하게 할 수도 있다.  제5장 세무 행정재의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20조 합명기업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확인을 받고 등록한 기업을 신청인으로 하고 합명사무 집행자인 합명인이 기업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조직의 주요책임자가 당해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주요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 추천을 받은 기타 구성원이 당해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한다.  제21조 주식기업의 주주대회, 주주 대표자회의, 이사회가, 구체 세무행정행위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공민이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공민이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 신청권한을 가진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병합, 분립하였거나 종지한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관이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심사 대상인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게 통지하여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기간에 신청인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심사대상인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할 것을 행정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삼자가 행정재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재의 안건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구체 행정행위의 행정관리 상대자가 아니지만 그의 권한이 당해 구체 행정행위에 의하여 박탈, 제한되었거나 의무를 부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으로서 행정관리상대자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동일 행정재의 안건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내지 5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7조 신청인이 원천공제 납부의무인의 세액 원천공제 납부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원천공제 납부 의무인의 주관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신청인이 세무기관이 위임한 단위와 개인의 대리징수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임한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8조 세무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한 조직이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세무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한 조직이 공동 피 신청인이다.  세무기관과 기타조직이 공동의 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29조 세무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의 인가를 받고 행한 구체 행정행위는 인가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신청인이 중대한 세무안건 심리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리위원회 소속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30조 세무기관이 설립한 파출기구, 내부기구 또는 기타조직이 법률, 법규에 따른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세무기관이 피 신청인이다.  제31조 신청인이나 제삼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의활동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제삼자가 위임한 대리인은 행정재의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사항, 권한과 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왕에서 공민이 서면으로 위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이를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제삼자가 위임을 해제하거나 번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정재의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은 본 기관 이외의 인원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하지 못한다.  제6장 세무 행정재의 신청  제32조 신청인은 세무기관의 구체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피 신청인의 장애설치 등 원인으로 법정 신청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에 지체된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신청인이 이 규칙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먼저 세무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 세액과 기한에 따라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결산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액이나 가산금을 결산한 후 또는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으로부터 제공한 담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60일내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담보 제공방식에는 보증, 저당, 질권 등이 있다.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보증인의 자격과 신용을 심사하고 법률이 규정한 자격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저당담보인, 질권담보인을 심사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당담보와 질권담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신청인이 이 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이외의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벌금 납부기간 만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세무기관의 추가벌금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벌금과 추가벌금을 납부한 후 다시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이 세칙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기간 계산은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즉석에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구체 행정행위 수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한 경우 접수인의 접수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3)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접수인의 우편물 수취증서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우편물 접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인의 송달 접수증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4) 구체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공시형식으로 송달하여 접수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공시에 규정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5) 세무기관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보완 고지한 경우 신청인의 세무기관 보완 고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6) 피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가 구체 행정행위를 알았다고 증명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세무기관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고 법에 따라 법률문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데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법 제6조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직책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재의 신청기간은 하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이행기간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2) 이행기간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기관의 신청접수 일로에서 만 60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 세무기관이 행한 구체 행정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게 행정재의 신청권리와 행정재의기관, 행정재의 신청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서면으로 행정재의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 방식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건이 되는 행정재의기관은 전자우편형태의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팩스, 전자우편 형태로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과 신청사항을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서면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행정재의 신청서에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기본상황. 여기에는 공민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 신분증명 번호, 근무단위,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를 포함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를 포함한다.  (2) 피 신청인의 명칭.  (3) 행정재의 청구, 행정재의 신청의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  (5) 행정재의 신청일자.  제40조 신청인이 구두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이 규칙 제39조의 규정사항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재의 신청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신청인에게 낭독해 주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 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법정직책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  (2)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 청구를 일괄로 제출하는 경우 구체 행정행위의 침해로 손실을 받은 증명자료.  (3) 법률, 법규에서 신청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상황.  제42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 시에 피 신청인을 잘못 지명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피 신청인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피 신청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수리를 거부하거나 행정재의 신청을 기각한다.  제43조 신청인이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접수한 경우 법정 행정재의기간 내에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였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7장 세무 행정재의 수리  제44조 행정재의 신청이 하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행정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법정 신청기간에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명확하고 피 신청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4) 신청인이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구체적인 행정재의 청구와 이유가 있는 경우.  (6) 이 규칙 제33조와 제34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재의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경우.  (8) 여타 행정재의기관이 동일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동일 주체, 동일 사실의 행정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행정재의기관은 반드시 5일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정재의 신청은 수리거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당 기관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재의 신청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 행정재의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하고 규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수리거부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재의 신청은 행정재의기구 접수일이 곧 수리일이다.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재의 신청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고 서술이 불명한 경우 행정재의기구가 당해 행정재의 신청 접수 일로부터 5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통지서에는 보완사항과 합리한 보완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어나하는 경우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 수리거부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하여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부수리를 명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이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상급 세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수리하거나 하급 세무기관이 관할하는 안건을 파기하여 재의할 수 있다.  제50조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체 행정행위로서 행정재의기관이 수리거부결정을 하였거나 수리하고 행정재의기간이 만료되어도 회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수리거부 결정서 입수 일부터 또는 행정재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후의 기간이 행정재의기간 만료기간이다.  제51조 행정재의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피 신청인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2) 행정재의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3)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그 요구가 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황.  (4) 법률에서 집행정지를 규정한 상황.  제8장 세무 행정재의 증거  제52조 행정재의의 증거에는 하기 유형을 포함한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전자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결론.  (8) 답사기록, 현장기록.  제53조 행정재의에서 피 신청인은 그가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54조 행정재의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안건 심사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안건사실에 의거하여야 한다. 안건을 확정하는 증거는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제55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합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의 법정형식 부합여부.  (2) 증거 취득의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사법해석의 규정부합여부.  (3) 증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불법상황 존재여부.  제56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의 조성원인.  (2) 증거 발견시의 환경.  (3) 증거가 원본이나 원 물체인지, 카피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원본이나 원 물체와 부합여부.  (4) 증거 제공자나 증인과 행정재의 참가자와 이해관계 존재여부.  (5) 증거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의 존재여부.  제57조 행정재의기관은 안건의 구체 실정에 근거하여 하기 측면으로 증거의 관련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증거와 증명대상인 사실과의 증명관련성 존재여부.  (2) 증거와 증명대상인 사실과의 관련정도.  (3) 증거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 존재여부.  제58조 하기 증거자료는 안건을 확정하는 의거로 하지 못한다.  (1)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수집한 증거자료.  (2) 몰 카, 몰 비, 도청 수단으로 취득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증거자료.  (3) 유인, 기만, 협박, 폭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증거자료.  (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기한을 경과하여 제공한 증거.  (5)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원품 제공을 거부하고 기타 입증증거가 없어 상대측이 인정하지 않는 카피본이나 복제품.  (6) 진위를 판명이 불가한 증거자료.  (7)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증인의 증언.  (8) 합법성과 진실성이 없는 기타 증거자료.  행정재의기구는 이 규칙 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취득한 관련 자료를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해위를 지지하는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9조 행정재의기간에 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인과 기타 관련조직 또는 개인에게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  제60조 행정재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서 증거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제,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시에는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련 인원에게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받는 단위와 인원은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활동을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저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지답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신청인과 제삼자는 피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회답서, 그가 작성한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상황을 제외하고 행정재의기관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세무 행정재의 심사와 결정  제62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수리일로부터 7일내에 행정재의 신청서부분이나 행정재의 신청각서 카피 본을 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은 신청서부본이나 신청각서 카피 본 입수 일로부터 10일내에 서면회답을 제출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안건은 원 구체 행정행위를 부담한 관련기구가 행정재의기구에 서면회답을 제출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행정재의기구 행정재의 안건심리 시에는 2명 이상의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64조 행정재의는 원칙상 서면심사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 신청인 및 제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5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으로서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66조 행정재의기구가 청문회소집을 결정한 경우 청문회소집 시간과 장소, 구체 요구사항을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삼자가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행정재의 청문회 주최인은 2명 이상이여야 하며 청문회 사회자는 행정재의기구가 지정한다.  제69조 청문회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삼자는 청문회 기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청문회기록은 보관서류에 철하여 행정재의기구 안건심리의거의 하나로 하여야 한다.  제70조 행정재의기관은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의 의거로 한 사실증거, 법률절차, 법률의거 및 그가 설정한 권리의무 내용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1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결정전에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하고 행정재의기구가 동의하는 경우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다시 동일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단 신청인이 그의 행정재의 신청 취하가 자신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행정재의기간에 피 신청인이 원 구체 행정행위를 개변하여도 행정재의 안건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3조 행정재의 신청 시에 신청인이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한 일괄심사를 제출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당해규정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 30일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60일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74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 심사과정에 그 의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당 기관에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 30일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75조 행정재의기구는 피 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하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구체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의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적절한 경우 유지결정을 한다.  (2) 피 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의 기한부이행을 결정한다.  (3) 구체 행정행위가 하기 각 목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변경 또는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결정한다. 취소 또는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다.  a. 주요사실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  b. 적용한 의거가 착오인 상황.  c. 법정절차를 위반한 상황.  d. 직권범위를 초월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상황.  e. 구체 행정행위가 확실히 부당한 상황.  (4) 피 신청인이 이 규칙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회답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와 의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결정한다.  제76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이 동일사실과 동일이유로 원 구체 행정행위와 동일하거나 기본상 동일한 구체 행정해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행정재의기관이 원 구체 행정행위가 법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취소한 다음 피 신청인이 다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행정재의기관이 원 구체 행정행위의 주요사실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용의거가 착오라는 결정을 취소하고 피 신청인이 다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실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지만 확실히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의거가 착오인 상황.    (2) 사실인정이 불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재의기관이 심리과정에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한 증거를 찾은 상황.  제78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신청기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세무기관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고 행정재의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세무기관에 상응한 법정직책이 없거나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행하였음을 발견한 상황.  (2)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 행정재의 신청이 행정재의 법 및 그 실시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상황.  상급 세무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기각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 신청 심리기간 계산 시에는 기각으로 지체된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9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중지한다.  (1)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고 그 근친이 행정재의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2)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행정재의 참가능력을 상실하였고 법정대리인의 행정재의 참가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종지하였고 권리의무 승계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황.  (4)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실종을 선고한 상황.  (5) 신청인, 피 신청인이 불가항력으로 행정재의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  (6) 행정재의기관이 불가항력으로 잠시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  (7) 안건이 법률적용문제와 관련되어 유권기관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  (8) 안건심리가 여타 안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나 여타 안건의 심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  (9) 행정재의를 중지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행정재의 안건심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 안건심리를 중지, 회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 피 신청인, 제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0조 행정재의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1)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취하를 요구하고 행정재의기구가 취하한 상황.  (2) 신청인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고 그 근친이 없거나 근친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상황.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종지하였고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상황.  (4)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이 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구의 인가를 받고 화해를 달성한 상황.  (5)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후 여타 행정재의기관이 이미 수리하였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수리하였음을 발견한 상황.  이 규칙 제79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중지하였고 60일을 경과하도록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제81조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 수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인은 60일내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간에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재의기관의 인가를 받고 적당히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피 신청인의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 신청인은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청구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기관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부합하는 청구라면 배상하고 구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인정 시에 법에 따라 피 신청인의 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 시에 행정배상요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법에 따라 원 구체 행정행위가 확정한 세금, 가산금, 벌금을 취소, 변경하고 재산의 차압, 봉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 신청인에게 세금과 가산금, 벌금 반환을 명하고 재산의 차압, 봉인 등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상응한 대금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간에 행정재의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하고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서는 일단 송달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84조 피 신청인은 반드시 행정재의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이 행정재의결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이나 관련 상급세무기관이 기한부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85조 신청인, 제삼자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최종 재결한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한다.  (1) 구체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재의결정은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 행정행위를 변경한 행정재의결정은 행정재의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0장 세무 행정재의 화해와 조정  제86조 하기 행정재의사항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결정을 하기 전에 자원, 합법의 원칙에서 화해를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기관이 조정할 수도 있다.  (1) 행정처벌, 세액책정, 의무소득세 비율 확정 등 자유계량 권한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  (2) 행정배상.  (3) 행정장려.  (4) 합리성 문제에 속하는 기타 구체 행정행위.  화해, 조정기간에는 행정재의 심리기한 계산이 정지된다.  제87조 화해를 달성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기구에 화해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는 합의내용이 사회 공공이익과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하여야 한다.  제88조 행정재의기구가 화해를 인가하면 행정재의는 종지하며 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재차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89조 조정은 하기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사실을 규명한 기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4)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90조 행정재의기관은 하기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동의를 받는다.  (2)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조정방안을 제출한다.  (4) 조정합의를 달성한다.  (5) 행정재의 조정서를 작성한다.  제91조 행정재의 조정서에는 행정재의의 청구, 사실, 이유, 조정결과를 명기하고 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는 시점에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행정재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즉시 행정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조정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 신청인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1장 세무 행정재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93조 각급세무기관은 행정재의 직책이행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독촉,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제94조 각급세무기관은 행정재의활동 책임제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행정재의활동을 단위의 목표책임제로 하여야 한다.  제95조 각급세무기관은 그 직책과 권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나 추출검사를 통하여 하급세무기관의 행정재의활동을 검사하는 동시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련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인이나 그 하급세무기관의 관련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후속작업을 잘하여야 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련기관은 행정재의 의견서 접수 일로부처 60일내에 관련 불법행정행위를 시정한 상황이나 후속작업을 개진한 상황을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간에 행정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 시행 중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도를 완벽히 하고 행정법 집행을 개진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97조 성급 이하 각급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 응소, 배상 통계표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대한 행정재의결정을 직전상금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8조 행정재의기구는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안건서류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 정재의 안건서류는 행정재의 신청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달아야 하며 목록이 명확하고 자료가 완벽하고 분류가 규범화 하고 정연하게 철하여야 한다.  제 99조 행정재의기구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업무훈련과 업무교환을 마련하여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업무자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활동을 정기적으로 총괄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재의활동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하여야 한다.  제12장 부 칙  제101조 행정재의기관과 행정재의기관의 직원, 피 신청인이 세무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 법 및 그 실시조례,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세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03조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전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재의활동에서 행정재의 전용인감은 행정재의기관의 직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4조 행정재의의 기간계산과 행정재의 문서송달은 기간, 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규칙의 행정재의기간에서 󰡒5일󰡓, 󰡒7일󰡓이라는 규정은 근무일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4일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세무 행정재의 규칙(잠정)》(국가세무총국 령 제8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税务行政复议规则**  （2010年2月10日国家税务总局令第21号公布；根据2015年12月28日《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税务行政复议规则〉的决定》修正）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进一步发挥行政复议解决税务行政争议的作用，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监督和保障税务机关依法行使职权，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以下简称行政复议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以下简称行政复议法实施条例），结合税收工作实际，制定本规则。  第二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以下简称申请人）认为税务机关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向税务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税务行政复议机关办理行政复议事项，适用本规则。  第三条 本规则所称税务行政复议机关（以下简称行政复议机关），指依法受理行政复议申请、对具体行政行为进行审查并作出行政复议决定的税务机关。  　 第四条 行政复议应当遵循合法、公正、公开、及时和便民的原则。  　行政复议机关应当树立依法行政观念，强化责任意识和服务意识，认真履行行政复议职责，坚持有错必纠，确保法律正确实施。  　第五条 行政复议机关在申请人的行政复议请求范围内，不得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行政复议决定。  　第六条 申请人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七条 行政复议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不得向申请人收取任何费用。  　　第八条 各级税务机关行政首长是行政复议工作第一责任人，应当切实履行职责，加强对行政复议工作的组织领导。  第九条 行政复议机关应当为申请人、第三人查阅案卷资料、接受询问、调解、听证等提供专门场所和其他必要条件。  　 第十条 各级税务机关应当加大对行政复议工作的基础投入，推进行政复议工作信息化建设，配备调查取证所需的照相、录音、录像和办案所需的电脑、扫描、投影、传真、复印等设备，保障办案交通工具和相应经费。  第二章 税务行政复议机构和人员  　　第十一条 各级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以下简称行政复议机构）依法办理行政复议事项，履行下列职责：  　 （一）受理行政复议申请。  　 （二）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查阅文件和资料。  　 （三）审查申请行政复议的具体行政行为是否合法和适当，起草行政复议决定。  　 （四）处理或者转送对本规则第十五条所列有关规定的审查申请。  　（五）对被申请人违反行政复议法及其实施条例和本规则规定的行为，依照规定的权限和程序向相关部门提出处理建议。  　（六）研究行政复议工作中发现的问题，及时向有关机关或者部门提出改进建议，重大问题及时向行政复议机关报告。  　 （七）和监督下级税务机关的行政复议工作。  　 （八）办理或者组织办理行政诉讼案件应诉事项。  　 （九）办理行政复议案件的赔偿事项。  　（十）办理行政复议、诉讼、赔偿等案件的统计、报告、归档工作和重大行政复议决定备案事项。  　（十一）其他与行政复议工作有关的事项。  　　第十二条 各级行政复议机关可以成立行政复议委员会，研究重大、疑难案件，提出处理建议。  　行政复议委员会可以邀请本机关以外的具有相关专业知识的人员参加。  　　第十三条 行政复议工作人员应当具备与履行行政复议职责相适应的品行、专业知识和业务能力，并取得行政复议法实施条例规定的资格。  第三章 税务行政复议范围  　　第十四条 行政复议机关受理申请人对税务机关下列具体行政行为不服提出的行政复议申请：  　（一）征税行为，包括确认纳税主体、征税对象、征税范围、减税、免税、退税、抵扣税款、适用税率、计税依据、纳税环节、纳税期限、纳税地点和税款征收方式等具体行政行为，征收税款、加收滞纳金，扣缴义务人、受税务机关委托的单位和个人作出的代扣代缴、代收代缴、代征行为等。  　（二）行政许可、行政审批行为。  　（三）发票管理行为，包括发售、收缴、代开发票等。  　（四）税收保全措施、强制执行措施。  　（五）行政处罚行为：  　1.罚款；  　2.没收财物和违法所得；  　3.停止出口退税权。  　（六）不依法履行下列职责的行为：  　1.颁发税务登记；  　2.开具、出具完税凭证、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  　3.行政赔偿；  　4.行政奖励；  　5.其他不依法履行职责的行为。  　（七）资格认定行为。  　（八）不依法确认纳税担保行为。  　（九）政府信息公开工作中的具体行政行为。  　（十）纳税信用等级评定行为。  　（十一）通知出入境管理机关阻止出境行为。  　（十二）其他具体行政行为。  　　第十五条 申请人认为税务机关的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下列规定不合法，对具体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时，可以一并向行政复议机关提出对有关规定的审查申请；申请人对具体行政行为提出行政复议申请时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规定的，可以在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以前提出对该规定的审查申请：  　 （一）国家税务总局和国务院其他部门的规定。  　 （二）其他各级税务机关的规定。  　 （三）地方各级人民政府的规定。  　 （四）地方人民政府工作部门的规定。  　 前款中的规定不包括规章。  第四章 税务行政复议管辖  　　第十六条 对各级国家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其上一级国家税务局申请行政复议。  　第十七条 对各级地方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选择向其上一级地方税务局或者该税务局的本级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人民政府对地方税务局的行政复议管辖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八条 对国家税务总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国家税务总局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申请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也可以向国务院申请裁决。国务院的裁决为最终裁决。  　 第十九条 对下列税务机关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按照下列规定申请行政复议：  　（一）对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国家税务总局申请行政复议；对计划单列市地方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选择向省地方税务局或者本级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二）对税务所（分局）、各级税务局的稽查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其所属税务局申请行政复议。  　 （三）对两个以上税务机关共同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共同上一级税务机关申请行政复议；对税务机关与其他行政机关共同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其共同上一级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  　（四）对被撤销的税务机关在撤销以前所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继续行使其职权的税务机关的上一级税务机关申请行政复议。  　（五）对税务机关作出逾期不缴纳罚款加处罚款的决定不服的，向作出行政处罚决定的税务机关申请行政复议。但是对已处罚款和加处罚款都不服的，一并向作出行政处罚决定的税务机关的上一级税务机关申请行政复议。  　　有前款（二）、（三）、（四）、（五）项所列情形之一的，申请人也可以向具体行政行为发生地的县级地方人民政府提交行政复议申请，由接受申请的县级地方人民政府依法转送。  第五章 税务行政复议申请人和被申请人  　　第二十条 合伙企业申请行政复议的，应当以工商行政管理机关核准登记的企业为申请人，由执行合伙事务的合伙人代表该企业参加行政复议；其他合伙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合伙人共同申请行政复议。  　 前款规定以外的不具备法人资格的其他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该组织的主要负责人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没有主要负责人的，由共同推选的其他成员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  　 第二十一条 股份制企业的股东大会、股东代表大会、董事会认为税务具体行政行为侵犯企业合法权益的，可以以企业的名义申请行政复议。  　 第二十二条 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死亡的，其近亲属可以申请行政复议；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为无行为能力人或者限制行为能力人，其法定代理人可以代理申请行政复议。  　 有权申请行政复议的法人或者其他组织发生合并、分立或终止的，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申请行政复议。  　 第二十三条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关认为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被审查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可以通知其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行政复议期间，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被审查的税务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可以向行政复议机关申请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第三人不参加行政复议，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  　第二十四条 非具体行政行为的行政管理相对人，但其权利直接被该具体行政行为所剥夺、限制或者被赋予义务的公民、法人或其他组织，在行政管理相对人没有申请行政复议时，可以单独申请行政复议。  　第二十五条 同一行政复议案件申请人超过5人的，应当推选1至5名代表参加行政复议。  　第二十六条 申请人对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作出该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为被申请人。  第二十七条 申请人对扣缴义务人的扣缴税款行为不服的，主管该扣缴义务人的税务机关为被申请人；对税务机关委托的单位和个人的代征行为不服的，委托税务机关为被申请人。  　第二十八条 税务机关与法律、法规授权的组织以共同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组织为共同被申请人。  　税务机关与其他组织以共同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为被申请人。  　　第二十九条 税务机关依照法律、法规和规章规定，经上级税务机关批准作出具体行政行为的，批准机关为被申请人。  　申请人对经重大税务案件审理程序作出的决定不服的，审理委员会所在税务机关为被申请人。  　第三十条 税务机关设立的派出机构、内设机构或者其他组织，未经法律、法规授权，以自己名义对外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为被申请人。  第三十一条 申请人、第三人可以委托1至2名代理人参加行政复议。申请人、第三人委托代理人的，应当向行政复议机构提交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载明委托事项、权限和期限。公民在特殊情况下无法书面委托的，可以口头委托。口头委托的，行政复议机构应当核实并记录在卷。申请人、第三人解除或者变更委托的，应当书面告知行政复议机构。  　 被申请人不得委托本机关以外人员参加行政复议。  第六章 税务行政复议申请  　　第三十二条 申请人可以在知道税务机关作出具体行政行为之日起60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  　因不可抗力或者被申请人设置障碍等原因耽误法定申请期限的，申请期限的计算应当扣除被耽误时间。  　第三十三条 申请人对本规则第十四条第（一）项规定的行为不服的，应当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申请人按照前款规定申请行政复议的，必须依照税务机关根据法律、法规确定的税额、期限，先行缴纳或者解缴税款和滞纳金，或者提供相应的担保，才可以在缴清税款和滞纳金以后或者所提供的担保得到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确认之日起60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  　申请人提供担保的方式包括保证、抵押和质押。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应当对保证人的资格、资信进行审查，对不具备法律规定资格或者没有能力保证的，有权拒绝。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应当对抵押人、出质人提供的抵押担保、质押担保进行审查，对不符合法律规定的抵押担保、质押担保，不予确认。  　第三十四条 申请人对本规则第十四条第（一）项规定以外的其他具体行政行为不服，可以申请行政复议，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申请人对税务机关作出逾期不缴纳罚款加处罚款的决定不服的，应当先缴纳罚款和加处罚款，再申请行政复议。  　第三十五条 本规则第三十二条第一款规定的行政复议申请期限的计算，依照下列规定办理：  　（一）当场作出具体行政行为的，自具体行政行为作出之日起计算。  　（二）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直接送达的，自受送达人签收之日起计算。  　　（三）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邮寄送达的，自受送达人在邮件签收单上签收之日起计算；没有邮件签收单的，自受送达人在送达回执上签名之日起计算。  　（四）具体行政行为依法通过公告形式告知受送达人的，自公告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计算。  　 （五）税务机关作出具体行政行为时未告知申请人，事后补充告知的，自该申请人收到税务机关补充告知的通知之日起计算。  　 （六）被申请人能够证明申请人知道具体行政行为的，自证据材料证明其知道具体行政行为之日起计算。    税务机关作出具体行政行为,依法应当向申请人送达法律文书而未送达的，视为该申请人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  　 第三十六条 申请人依照行政复议法第六条第（八）项、第（九）项、第（十）项的规定申请税务机关履行法定职责，税务机关未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依照下列规定计算：  　（一）有履行期限规定的，自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二）没有履行期限规定的，自税务机关收到申请满60日起计算。  　　第三十七条 税务机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对申请人的权利、义务可能产生不利影响的，应当告知其申请行政复议的权利、行政复议机关和行政复议申请期限。  　　第三十八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可以采取当面递交、邮寄或者传真等方式提出行政复议申请。  　 有条件的行政复议机关可以接受以电子邮件形式提出的行政复议申请。  　对以传真、电子邮件形式提出行政复议申请的，行政复议机关应当审核确认申请人的身份、复议事项。  　第三十九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申请书中载明下列事项：  　　（一）申请人的基本情况，包括公民的姓名、性别、出生年月、身份证件号码、工作单位、住所、邮政编码、联系电话；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邮政编码、联系电话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二）被申请人的名称。  　　（三）行政复议请求、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和理由。  　　（四）申请人的签名或者盖章。  　　（五）申请行政复议的日期。  　　第四十条 申请人口头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机构应当依照本规则第三十九条规定的事项，当场制作行政复议申请笔录，交申请人核对或者向申请人宣读，并由申请人确认。  　　第四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人应当提供证明材料：  　　（一）认为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提供要求被申请人履行法定职责而被申请人未履行的证明材料。  　　（二）申请行政复议时一并提出行政赔偿请求的，提供受具体行政行为侵害而造成损害的证明材料。  　　（三）法律、法规规定需要申请人提供证据材料的其他情形。  第四十二条 申请人提出行政复议申请时错列被申请人的，行政复议机关应当告知申请人变更被申请人。申请人不变更被申请人的，行政复议机关不予受理，或者驳回行政复议申请。  　　第四十三条 申请人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已经受理的，在法定行政复议期限内申请人不得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申请人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人民法院已经依法受理的，不得申请行政复议。  第七章 税务行政复议受理  　　第四十四条 行政复议申请符合下列规定的，行政复议机关应当受理：  　　（一）属于本规则规定的行政复议范围。  　　（二）在法定申请期限内提出。  　　（三）有明确的申请人和符合规定的被申请人。  　　（四）申请人与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  　　（五）有具体的行政复议请求和理由。  　　（六）符合本规则第三十三条和第三十四条规定的条件。  　　（七）属于收到行政复议申请的行政复议机关的职责范围。  　　（八）其他行政复议机关尚未受理同一行政复议申请，人民法院尚未受理同一主体就同一事实提起的行政诉讼。  　　第四十五条 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以后，应当在5日内审查，决定是否受理。对不符合本规则规定的行政复议申请，决定不予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  　　对不属于本机关受理的行政复议申请，应当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复议机关提出。  　　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以后未按照前款规定期限审查并作出不予受理决定的，视为受理。  　　第四十六条 对符合规定的行政复议申请，自行政复议机构收到之日起即为受理；受理行政复议申请，应当书面告知申请人。  第四十七条 行政复议申请材料不齐全、表述不清楚的，行政复议机构可以自收到该行政复议申请之日起5日内书面通知申请人补正。补正通知应当载明需要补正的事项和合理的补正期限。无正当理由逾期不补正的，视为申请人放弃行政复议申请。  　　补正申请材料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第四十八条 上级税务机关认为行政复议机关不予受理行政复议申请的理由不成立的，可以督促其受理；经督促仍然不受理的，责令其限期受理。  　　上级税务机关认为行政复议申请不符合法定受理条件的，应当告知申请人。  　　第四十九条 上级税务机关认为有必要的，可以直接受理或者提审由下级税务机关管辖的行政复议案件。  　　第五十条 对应当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再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具体行政行为，行政复议机关决定不予受理或者受理以后超过行政复议期限不作答复的，申请人可以自收到不予受理决定书之日起或者行政复议期满之日起15日内，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依照本规则第八十三条规定延长行政复议期限的，以延长以后的时间为行政复议期满时间。  　　第五十一条 行政复议期间具体行政行为不停止执行；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停止执行：  　　（一）被申请人认为需要停止执行的。  　　（二）行政复议机关认为需要停止执行的。  　　（三）申请人申请停止执行，行政复议机关认为其要求合理，决定停止执行的。  　　（四）法律规定停止执行的。  第八章 税务行政复议证据  　　第五十二条 行政复议证据包括以下类别：  　　（一）书证；  　　（二）物证；  　　（三）视听资料；  　　（四）电子数据；  　　（五）证人证言；  　　（六）当事人的陈述；  　　（七）鉴定意见；  　　（八）勘验笔录、现场笔录。  　　第五十三条 在行政复议中，被申请人对其作出的具体行政行为负有举证责任。  　　第五十四条 行政复议机关应当依法全面审查相关证据。行政复议机关审查行政复议案件，应当以证据证明的案件事实为依据。定案证据应当具有合法性、真实性和关联性。  　　第五十五条 行政复议机关应当根据案件的具体情况，从以下方面审查证据的合法性：  　　（一）证据是否符合法定形式。  　　（二）证据的取得是否符合法律、法规、规章和司法解释的规定。  　　（三）是否有影响证据效力的其他违法情形。  　　第五十六条 行政复议机关应当根据案件的具体情况，从以下方面审查证据的真实性：  　　（一）证据形成的原因。  　　（二）发现证据时的环境。  　　（三）证据是否为原件、原物，复制件、复制品与原件、原物是否相符。  　　（四）提供证据的人或者证人与行政复议参加人是否具有利害关系。  　　（五）影响证据真实性的其他因素。  　　第五十七条 行政复议机关应当根据案件的具体情况，从以下方面审查证据的关联性：  　　（一）证据与待证事实是否具有证明关系。  　　（二）证据与待证事实的关联程度。  　　（三）影响证据关联性的其他因素。  　　第五十八条 下列证据材料不得作为定案依据：  　　（一）违反法定程序收集的证据材料。  　　（二）以偷拍、偷录和窃听等手段获取侵害他人合法权益的证据材料。  　　（三）以利诱、欺诈、胁迫和暴力等不正当手段获取的证据材料。  　　（四）无正当事由超出举证期限提供的证据材料。  　　（五）无正当理由拒不提供原件、原物，又无其他证据印证，且对方不予认可的证据的复制件、复制品。  　　（六）无法辨明真伪的证据材料。  　　（七）不能正确表达意志的证人提供的证言。  　　（八）不具备合法性、真实性的其他证据材料。  　　行政复议机构依据本规则第十一条第（二）项规定的职责所取得的有关材料，不得作为支持被申请人具体行政行为的证据。  　　第五十九条 在行政复议过程中，被申请人不得自行向申请人和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收集证据。  　　第六十条 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可以调查取证。  行政复议工作人员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时，可以查阅、复制和调取有关文件和资料，向有关人员询问。调查取证时，行政复议工作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当事人和有关人员出示证件。被调查单位和人员应当配合行政复议工作人员的工作，不得拒绝、阻挠。  　　需要现场勘验的，现场勘验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第六十一条 申请人和第三人可以查阅被申请人提出的书面答复、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行政复议机关不得拒绝。  第九章 税务行政复议审查和决定  　　第六十二条 行政复议机构应当自受理行政复议申请之日起7日内，将行政复议申请书副本或者行政复议申请笔录复印件发送被申请人。被申请人应当自收到申请书副本或者申请笔录复印件之日起10日内提出书面答复，并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对国家税务总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案件，由原承办具体行政行为的相关机构向行政复议机构提出书面答复，并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第六十三条 行政复议机构审理行政复议案件，应当由2名以上行政复议工作人员参加。  　　第六十四条 行政复议原则上采用书面审查的办法，但是申请人提出要求或者行政复议机构认为有必要时，应当听取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的意见，并可以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了解情况。  　　第六十五条 对重大、复杂的案件，申请人提出要求或者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可以采取听证的方式审理。  　　第六十六条 行政复议机构决定举行听证的，应当将举行听证的时间、地点和具体要求等事项通知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  　　第三人不参加听证的，不影响听证的举行。  　　第六十七条 听证应当公开举行，但是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除外。  　　第六十八条 行政复议听证人员不得少于2人，听证主持人由行政复议机构指定。  　　第六十九条 听证应当制作笔录。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应当确认听证笔录内容。  　　行政复议听证笔录应当附卷，作为行政复议机构审理案件的依据之一。  　　第七十条 行政复议机关应当全面审查被申请人的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事实证据、法律程序、法律依据和设定的权利义务内容的合法性、适当性。  　　第七十一条 申请人在行政复议决定作出以前撤回行政复议申请的，经行政复议机构同意，可以撤回。  申请人撤回行政复议申请的，不得再以同一事实和理由提出行政复议申请。但是，申请人能够证明撤回行政复议申请违背其真实意思表示的除外。  　　第七十二条 行政复议期间被申请人改变原具体行政行为的，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但是，申请人依法撤回行政复议申请的除外。  　　第七十三条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依据本规则第十五条规定一并提出对有关规定的审查申请的，行政复议机关对该规定有权处理的，应当在30日内依法处理；无权处理的，应当在7日内按照法定程序逐级转送有权处理的行政机关依法处理，有权处理的行政机关应当在60日内依法处理。处理期间，中止对具体行政行为的审查。  　　第七十四条 行政复议机关审查被申请人的具体行政行为时，认为其依据不合法，本机关有权处理的，应当在30日内依法处理；无权处理的，应当在7日内按照法定程序逐级转送有权处理的国家机关依法处理。处理期间，中止对具体行政行为的审查。  　　第七十五条 行政复议机构应当对被申请人的具体行政行为提出审查意见，经行政复议机关负责人批准，按照下列规定作出行政复议决定：  　　（一）具体行政行为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适用依据正确，程序合法，内容适当的，决定维持。  　 （二）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决定其在一定期限内履行。  　　（三）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决定撤销、变更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决定撤销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的，可以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  　　1.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的；  　　2.适用依据错误的；  　　3.违反法定程序的；  　　4.超越职权或者滥用职权的；  　　5.具体行政行为明显不当的。  　　（四）被申请人不按照本规则第六十二条的规定提出书面答复，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的，视为该具体行政行为没有证据、依据，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  第七十六条 行政复议机关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被申请人不得以同一事实和理由作出与原具体行政行为相同或者基本相同的具体行政行为；但是行政复议机关以原具体行政行为违反法定程序决定撤销的，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除外。  　　行政复议机关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被申请人不得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决定；但是行政复议机关以原具体行政行为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或适用依据错误决定撤销的，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除外。  　　第七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变更：  　　（一）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但是明显不当或者适用依据错误的。  　　（二）认定事实不清，证据不足，但是经行政复议机关审理查明事实清楚，证据确凿的。  　　第七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驳回行政复议申请：  　　（一）申请人认为税务机关不履行法定职责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受理以后发现该税务机关没有相应法定职责或者在受理以前已经履行法定职责的。  　　（二）受理行政复议申请后，发现该行政复议申请不符合行政复议法及其实施条例和本规则规定的受理条件的。  　　上级税务机关认为行政复议机关驳回行政复议申请的理由不成立的，应当责令限期恢复受理。行政复议机关审理行政复议申请期限的计算应当扣除因驳回耽误的时间。  　　第七十九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中止：  　　（一）作为申请人的公民死亡，其近亲属尚未确定是否参加行政复议的。  　　（二）作为申请人的公民丧失参加行政复议的能力，尚未确定法定代理人参加行政复议的。  　　（三）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尚未确定权利义务承受人的。  　　（四）作为申请人的公民下落不明或者被宣告失踪的。  　　（五）申请人、被申请人因不可抗力，不能参加行政复议的。  　　（六）行政复议机关因不可抗力原因暂时不能履行工作职责的。  　　（七）案件涉及法律适用问题，需要有权机关作出解释或者确认的。  　　（八）案件审理需要以其他案件的审理结果为依据，而其他案件尚未审结的。  　　（九）其他需要中止行政复议的情形。  　　行政复议中止的原因消除以后，应当及时恢复行政复议案件的审理。  　　行政复议机构中止、恢复行政复议案件的审理，应当告知申请人、被申请人、第三人。  　　第八十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终止：  　　（一）申请人要求撤回行政复议申请，行政复议机构准予撤回的。  　　（二）作为申请人的公民死亡，没有近亲属，或者其近亲属放弃行政复议权利的。  　　（三）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其权利义务的承受人放弃行政复议权利的。  　　（四）申请人与被申请人依照本规则第八十七条的规定，经行政复议机构准许达成和解的。  　　（五）行政复议申请受理以后，发现其他行政复议机关已经先于本机关受理，或者人民法院已经受理的。  　　依照本规则第七十九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中止行政复议，满60日行政复议中止的原因未消除的，行政复议终止。  　　第八十一条 行政复议机关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被申请人应当在60日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情况复杂，不能在规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经行政复议机关批准，可以适当延期，但是延期不得超过30日。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被申请人重新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八十二条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可以一并提出行政赔偿请求，行政复议机关对符合国家赔偿法的规定应当赔偿的，在决定撤销、变更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具体行政行为违法时，应当同时决定被申请人依法赔偿。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没有提出行政赔偿请求的，行政复议机关在依法决定撤销、变更原具体行政行为确定的税款、滞纳金、罚款和对财产的扣押、查封等强制措施时，应当同时责令被申请人退还税款、滞纳金和罚款，解除对财产的扣押、查封等强制措施，或者赔偿相应的价款。  　　第八十三条 行政复议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行政复议决定。情况复杂，不能在规定期限内作出行政复议决定的，经行政复议机关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期，并告知申请人和被申请人；但是延期不得超过30日。  　　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应当制作行政复议决定书，并加盖行政复议机关印章。  　　行政复议决定书一经送达，即发生法律效力。  　　第八十四条 被申请人应当履行行政复议决定。  　　被申请人不履行、无正当理由拖延履行行政复议决定的，行政复议机关或者有关上级税务机关应当责令其限期履行。  　　第八十五条 申请人、第三人逾期不起诉又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或者不履行最终裁决的行政复议决定的，按照下列规定分别处理：  　　（一）维持具体行政行为的行政复议决定，由作出具体行政行为的税务机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二）变更具体行政行为的行政复议决定，由行政复议机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章 税务行政复议和解与调解  　　第八十六条 对下列行政复议事项，按照自愿、合法的原则，申请人和被申请人在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以前可以达成和解，行政复议机关也可以调解：  　　（一）行使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如行政处罚、核定税额、确定应税所得率等。  　　（二）行政赔偿。  　　（三）行政奖励。  　　（四）存在其他合理性问题的具体行政行为。  　　行政复议审理期限在和解、调解期间中止计算。  　　第八十七条 申请人和被申请人达成和解的，应当向行政复议机构提交书面和解协议。和解内容不损害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行政复议机构应当准许。  　　第八十八条 经行政复议机构准许和解终止行政复议的，申请人不得以同一事实和理由再次申请行政复议。  　　第八十九条 调解应当符合下列要求：  　　（一）尊重申请人和被申请人的意愿。  　　（二）在查明案件事实的基础上进行。  　　（三）遵循客观、公正和合理原则。  　　（四）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第九十条 行政复议机关按照下列程序调解：  　　（一）征得申请人和被申请人同意。  　　（二）听取申请人和被申请人的意见。  　　（三）提出调解方案。  　　（四）达成调解协议。  　　（五）制作行政复议调解书。  　　第九十一条 行政复议调解书应当载明行政复议请求、事实、理由和调解结果，并加盖行政复议机关印章。行政复议调解书经双方当事人签字，即具有法律效力。  　　调解未达成协议，或者行政复议调解书不生效的，行政复议机关应当及时作出行政复议决定。  　　第九十二条 申请人不履行行政复议调解书的，由被申请人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一章　税务行政复议指导和监督  　　第九十三条 各级税务复议机关应当加强对履行行政复议职责的监督。行政复议机构负责对行政复议工作进行系统督促、指导。  　　第九十四条 各级税务机关应当建立健全行政复议工作责任制，将行政复议工作纳入本单位目标责任制。  　　第九十五条 各级税务机关应当按照职责权限，通过定期组织检查、抽查等方式，检查下级税务机关的行政复议工作，并及时向有关方面反馈检查结果。  　　第九十六条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关发现被申请人和其他下级税务机关的相关行政行为违法或者需要做好善后工作的，可以制作行政复议意见书。有关机关应当自收到行政复议意见书之日起60日内将纠正相关行政违法行为或者做好善后工作的情况报告行政复议机关。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构发现法律、法规和规章实施中带有普遍性的问题，可以制作行政复议建议书，向有关机关提出完善制度和改进行政执法的建议。  　　第九十七条 省以下各级税务机关应当定期向上一级税务机关提交行政复议、应诉、赔偿统计表和分析报告，及时将重大行政复议决定报上一级行政复议机关备案。  第九十八条 行政复议机构应当按照规定将行政复议案件资料立卷归档。  行政复议案卷应当按照行政复议申请分别装订立卷，一案一卷，统一编号，做到目录清晰、资料齐全、分类规范、装订整齐。  　 第九十九条 行政复议机构应当定期组织行政复议工作人员业务培训和工作交流，提高行政复议工作人员的专业素质。  　 第一百条 行政复议机关应当定期总结行政复议工作。对行政复议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依照有关规定表彰和奖励。  第十二章 附 则  　　第一百零一条 行政复议机关、行政复议机关工作人员和被申请人在税务行政复议活动中，违反行政复议法及其实施条例和本规则规定的，应当依法处理。  　　第一百零二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税务机关申请行政复议，适用本规则。  　　第一百零三条 行政复议机关在行政复议工作中可以使用行政复议专用章。行政复议专用章与行政复议机关印章在行政复议中具有同等效力。  　　第一百零四条 行政复议期间的计算和行政复议文书的送达，依照民事诉讼法关于期间、送达的规定执行。  　　本规则关于行政复议期间有关“5日”、“7日”的规定指工作日，不包括法定节假日。  　　第一百零五条 本规则自2010年4月1日起施行，2004年2月24日国家税务总局公布的《税务行政复议规则（暂行）》（国家税务总局令第8号）同时废止。 |